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5년 2월 18일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규약 ·····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 33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 41

05. 지회 운영 규정 ····· 47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 55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 61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69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75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81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 85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 91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 95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 101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 113

16. 인사 규정 ····· 123

17. 복무 규정 ····· 149

18. 보수 규정 ····· 175

19. 회계 규정 ····· 199

20. 물품관리 규정 ····· 219

21. 여비 규정 ····· 239

22. 문서관리 규정 ····· 247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257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 295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 329

26. 실업팀 운영 규정 ····· 349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 367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1. 19.
개정 2022. 12. 13.
개정 2025. 02. 18.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각종위원회로 전문체육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 12. 13.>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조에 의한 전문체육 사업과 운영 및 업무 등 전문체육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적 경기력향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 및 전국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스포츠과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가맹단체 육성,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6. 전국체전 선수단 훈련 및 참가 임원,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7. 선수단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8.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의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실업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전문체육 사업관련 직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2. 18.>

②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5. 2. 18.>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 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2. 18.>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5. 2. 18.>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2025. 2. 18.>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개정 2025. 2. 18.>

제11조(수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장애인체육회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3조(긴급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

부 칙(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